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52
------	------

2021. 9. 6.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1. 9. 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김의승)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 등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적시에 현행화하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 101개 조례를 일괄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나. 상위법령 등의 제명 및 조문 등 변경사항 반영

- 제명 변경: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 조항 변경: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 제38조제1항 등

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및 그 밖의 오기 사항 등 정비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조례안의 개요

-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의 현행화와 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된 행정기구 명칭의 반영, 오기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음.

나. 자치법규 일괄정비 현황

- 지방자치의 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속화에 따라 지방행정 영역이 확대되면서, 지방행정의 법적 근거인 자치법규가 주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서울시는 8월말 현재 760건¹⁾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후속입법 차원에서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도 이를 적시에 모두 반영하기에는 입법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음.
- 이에 서울시는 2003년 이후 모두 26차례에 걸쳐 자치법규와 각종 위원회를 일괄정비²⁾ 형식으로 정비해 왔음.

1) 서울시 조례와 규칙 등을 제공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에 조례 760건, 규칙 242건, 훈령 29건, 예규 10건이 게재되어 있음(2020. 11. 18. 기준).

2) 일괄정비는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입법기술’로 개별 자치법규를 일일이 개정하지 않고 일괄개정조례안을 만들어 본칙에서 손쉽게 개정하는 방법임. 일괄정비 방식에는 부칙에서 다른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는 방식과, 일괄개정입법 추진방식이

다. 조례안의 일괄개정 사항

-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오기 사항 등을 포함해 모두 101건의 조례를 일괄정비하고 있음.

< 조례안 일괄개정 유형별 주요 예시 >

유형	유형별 주요 예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68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지방자치법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 지방자치법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상위법령 제명 및 인용조문 변경(59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36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민생정책관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택시물류과장 ⇒ 택시정책과장 ○ 도시재생실장 ⇒ 균형발전본부장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재정담당관 ○ 재생정책과장 ⇒ 균형발전정책과장 ○ 거점성장추진단 ⇒ 전략산업기반과 ○ 주택건축본부 ⇒ 주택정책실

있음. 이중 부칙에서 개정하는 방식은 용어 등 경미한 사항의 정리 개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되며, 일괄정비입법 추진방식은 부칙에 의한 다른 법령의 개정이 시간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곤란한 경우 또는 정책의 일괄실시를 위하여 관련조례의 일괄정비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고 있음.

오기(44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 일괄정비 방식의 조례 정비는 단순한 제명과 조문 변경 등의 사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입법방식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치법규 서비스 접근성과 이해도 증진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음.
- 반면, 상임위 소관주의를 훼손하는 전문성 없는 심사 문제와 논란이 있는 조례안을 손쉽게 처리하기 위한 도구화로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개별 조례의 본원적 내용에 대한 침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함.
- 이번 일괄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개정사항과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의 변경, 시행규칙 제명 변경, 오기 등을 정비해 법적 적합성과 시민의 자치법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음.

- 다만, 일괄정비 대상인 101개의 조례를 포함한 전체 조례 중 일부에서 추가적인 개정사항이 확인되었으므로 수정이 필요함.

<추가 정비 대상 조례 현황>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정비 조례안 제37조)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설치) ① 법 제113조에 따라 청와대 안에서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u>시장 소속하에서</u> 서울특별시청와대소방대(이하 이 절에서 “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4조(설치) ① 법 제126조에 따라 청와대 안에서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u>시장 소속 하에</u> 서울특별시청와대소방대(이하 이 절에서 “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1조(설치) ① 법 제114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건설사업용 각종 자재와 토질의 시험·연구,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u>계량기의</u> 검정·검사,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택시미터 수리 검정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서 <u>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u> (이하 이 절에서 “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1조(설치) ① 법 제127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건설사업용 각종 자재와 토질의 시험·연구,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u>계량기의</u> 검정·검사,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택시미터 수리 검정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서 <u>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u> (이하 이 절에서 “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정비 조례안 제53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예산의 요구 및 편성) 예산요구기관의 장은 매 전년도 8월 31일까지 소관별 세입세출 예산요구서를 다음 각호의 <u>서류를</u> 첨부하여 예산편성기관(기획조정실장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의 요구 및 편성)----- ----- ----- <u>각 호의 서류를</u> 첨부하여-----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정비 조례안 제60조)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② (생략) 2.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② (현행과 같음) 2. 부지면적 : -----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정비 조례안 제67조)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자동차의 공회전 금지) ① 자동차운전자는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정차 등의 상태에서는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21조(자동차의 공회전 금지) ① -----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정비 조례안 제73조)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이용료) ④ (생 략) 9.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및 제2호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제8조(이용료) ④ (현행과 같음) 9.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정비 조례안 제74조)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 략)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너비 8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다만, 지식산업센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것에 한한다),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29조(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행과 같음) 9. ----- -(너비 8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 ----- ----- ----- -----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③ (생략)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한국토지주택(L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하는 학교이적지가 영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개발되는 경우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③ (현행과 같음) 2. ----- 한국토지주택공사,----- -----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정비 조례안 제75조)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점용물의 관리) ② 공원·녹지관리청이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과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작성하여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점용물의 관리) ② 공원·녹지관리청이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과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위원장의 의회 출석·답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가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의회 출석·답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가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이 누락되거나 띄어쓰기 등 오기가 추가로 확인된 조례가 있어 일부 규정을 수정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한국토지주택(LH)공사” 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로 하는 등 문구의 오기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규정을 수정함(안 제37조, 안 제53조, 안 제60조, 안 제67조, 안 제73조, 안 제74조, 안 제75조).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중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사항을 수정함(안 제103조 신설).

Ⅵ.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652
----------	---------

제안년월일 : 2021년 9월 6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이 누락되거나 띄어쓰기 등 오기가 추가로 확인된 조례가 있어 일부 규정을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한국토지주택(LH)공사” 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로 하는 등 문구의 오기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규정을 수정함(안 제37조, 안 제53조, 안 제60조, 안 제67조, 안 제73조, 안 제74조, 안 제75조)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중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사항을 수정함(안 제103조 신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4조 및 제116조” 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및 제129조” 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3조” 를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6조” 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1조제1항 중 “법 제113조” 를 각각 “법 제126조” 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법 제113조” 를 “법 제126조” 로 하고,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청와대소방대” 를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청와대소방대” 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법 제113조” 를 “법 제126조” 로 한다.

제50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64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71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3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89조제1항, 제92조제1항, 제95조제1항, 제98조제1항 중 “법 제114조” 를 각각 “법 제127조” 로 한다.

제101조제1항 중 “법 제114조” 를 “법 제127조” 로 하고 “정하는계량기의검정·검사” 를 “정하는 계량기의 검정·검사” 로 한다,

제104조제1항, 제110조제1항, 제113조제1항, 제116조제1항 및 제119조제1항 중 “법 제114조” 를 각각 “법 제127조” 로 한다.

제122조, 제125조 및 제128조제1항 중 “법 제116조” 를 각각 “법 제129조” 로 한다.

안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 를 “「지방자치법」 제142조” 로 한다.

제6조 중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를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을 “재정담당관”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안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을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안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중 “주택건축본부장” 을 “주택정책실장” 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 를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으로 한다.

안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을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로 한다.

제8조제4항제9호 중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를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로 한다.

안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29조제9호 중 “(너비 8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다만,” 을 “(너비 8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으로 한다.

제54조제3항제2호 중 “한국토지주택(LH)공사” 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로 한다.

안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12조제2호자목 중 “「지적법」”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점용허가관리대장을작성하여관리하여야 한다.”를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3 태양에너지 설비의 점용료란 중 “에너지조례 제25조”를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19조”로 한다.

안 제103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

정, 제37조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제22조제1항, 제25조 제1항, 제28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44조제1항(「지방자치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 제50조제 1항, 제53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64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71조제1항, 제 74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3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89조제1 항, 제92조제1항, 제95조제1항, 제98조제1항, 제101조제1항(「지방자치법」 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104조제1항, 제110조제1항, 제113조제1항, 제116조 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2조, 제125조, 제128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38조의 개정규정, 제39조 중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의 개정규정, 제40조 중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제1조 및 제5조 제1항의 개정규정, 제41조 중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 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42조 중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 제43조 중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44조 중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 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45조 중 서울특별시 도 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46조 중 서 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47조 중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5항 의 개정규정, 제48조 중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 조(「지방자치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2조의 개정규정, 제49조 중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50조 중 서울특별시 사 회복지기금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51조 중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 례 제1조 및 별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 제52조 중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 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53조 중 서울특별 시 재정운영 조례 제4조의 개정규정, 제54조 중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 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55조 중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56조 중 서울 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

규정, 제57조 중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제 10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안	수정안
<p>제37조(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4조 및 제116조”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및 제129조”로 한다.</p> <p>제2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로 한다.</p> <p>제25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1조제1항, <u>제4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u> 중 “법 제113조”를 각각 “법 제126조”로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50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64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71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3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89조제1항, 제92조제1항, 제95조제1항, <u>제98조제1항, 제101조제1항, 제104조제1항, 제110조제1항, 제113조제1항, 제116조제1항 및 제119조제1항</u> 중 “법 제114조”를 각각 “법 제127조”로 한다.</p>	<p>제37조(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조례안과 같음)</p> <p>(조례안과 같음)</p> <p>제25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7조제1항, <u>제41조제1항</u> 중 “법 제113조”를 각각 “법 제126조”로 한다.</p> <p><u>제44조제1항</u> 중 “법 제113조”를 “법 제126조”로 하고, “소속하에서서울특별시청와대소방대”를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청와대소방대”로 한다.</p> <p><u>제47조제1항</u> 중 “법 제113조”를 “법 제126조”로 한다.</p> <p>제50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64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71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3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89조제1항, 제92조제1항, 제95조제1항, <u>제98조제1항</u> 중 “법 제114조”를 각각 “법 제127조”로 한다.</p>

원안	수정안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101조제1항 중 “<u>법 제114조</u>”를 “<u>법 제127조</u>”로 하고 “<u>정하는계량기의검정·검사</u>”를 “<u>정하는 계량기의 검정·검사</u>”로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104조제1항, 제110조제1항, 제113조제1항, 제116조제1항 및 제119조제1항 중 “<u>법 제114조</u>”를 각각 “<u>법 제127조</u>”로 한다.</p> <p>(조례안과 같음)</p> <p>제122조, 제125조 및 제128조제1항 중 “<u>법 제116조</u>”를 각각 “<u>법 제129조</u>”로 한다.</p> <p>제53조(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u>「지방자치법」 제127조</u>”를 “<u>「지방자치법」 제142조</u>”로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13조제1항 중 “<u>재정균형발전담당관</u>”을 “<u>재정담당관</u>”으로 한다.</p> <p>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u>「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을 “<u>「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으로 한다.</p> <p>제60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101조제1항 중 “<u>법 제114조</u>”를 “<u>법 제127조</u>”로 하고 “<u>정하는계량기의검정·검사</u>”를 “<u>정하는 계량기의 검정·검사</u>”로 한다.</p> <p>제104조제1항, 제110조제1항, 제113조제1항, 제116조제1항 및 제119조제1항 중 “<u>법 제114조</u>”를 각각 “<u>법 제127조</u>”로 한다.</p> <p>(조례안과 같음)</p> <p>제53조(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조례안과 같음)</p> <p>제6조 중 “<u>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u>”를 “<u>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u>”로 한다.</p> <p>(조례안과 같음)</p> <p>(조례안과 같음)</p> <p>제60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9조제2항제2호 중 “<u>[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u>”</p>

원안	수정안
<p>제31조제4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p> <p>제67조(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2조제5항제1호 중 “주택건축본부장”을 “주택정책실장”으로 한다.</p>	<p>÷ 해당 건물의 연면적”을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으로 한다. (조례안과 같음)</p> <p>제67조(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73조(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 중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을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로 한다.</p>	<p>제2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로 한다.</p> <p>제73조(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74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p>	<p>제8조제4항제9호 중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한다.</p> <p>제74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p>

원안	수정안
<p>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2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75조(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p> <p>제10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12조제2호자목 중 “지적법”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p> <p>제11조제1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과 같이 개정한다.</p> <p>(조례안과 같음)</p> <p><u>제29조제9호 중 “(너비 8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을 “(너비 8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으로 한다.</u></p> <p><u>제54조제3항제2호 중 “한국토지주택(LH)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u></p> <p>제75조(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조례안과 같음)</p> <p>(조례안과 같음)</p> <p>(조례안과 같음)</p> <p><u>제14조제2항 중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관리하여야 한다.”를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u></p>

원안	수정안
<p>별표 3 태양에너지 설비의 점용료란 중 “에너지조례 제25조”를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19조”로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조례안과 같음)</p> <p><u>제103조(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p> <p><u>제19조 중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u></p>
<p>부 칙</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u>제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개정규정</u>, 제39조 중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40조 중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제1조 및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41조 중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42조 중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 제43조 중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44조 중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45조 중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46조 중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u>제2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규정</u>, 제37조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u>제1조,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44조제1항(「지방자치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64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71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3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89조제1항, 제92조제1항, 제95조제1항, 제98조제1항, 제101조제1항(「지방자치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104조제1항, 제110조제1항, 제113조제1항, 제116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2조, 제125조, 제128조제1항의 개정규정</u>, 제38조의 개정규정,</p>

원안	수정안
<p>영에 관한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47조 중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제48조 중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지방자치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2조의 개정규정, 제49조 중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50조 중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51조 중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 및 별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 제52조 중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53조 중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4조의 개정규정, 제54조 중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55조 중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56조 중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제57조 중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p>	<p>제39조 중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40조 중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제1조 및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41조 중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42조 중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 제43조 중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44조 중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45조 중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46조 중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47조 중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제48조 중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지방자치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2조의 개정규정, 제49조 중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50조 중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51조 중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 및 별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 제52조 중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53조 중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4조의 개정규정, 제54조 중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p>

원안	수정안
	<p>조의 개정규정, 제55조 중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56조 중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제57조 중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u>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제103조의 개정규정은</u>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p>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조문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 명칭이 변경되는 조문 등을 일괄정비하여 법령 적합성 확보 및 시민의 자치법규 접근성 개선을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를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6조” 를 “「지방자치법」 제129조” 로 한다.

제16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67조부터 제171조까지” 를 “「지방자치법」 제185조 및 제187조부터 제190조까지” 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

항” 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4조” 를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3조” 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64조” 를 “법 제73조” 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 를 “「지방자치법」 제125조” 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
특별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90조” 를 “「지방자치법」 제102
조” 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 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공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을 “「지방자치법」 제
117조제1항” 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
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0조제5항 중 “「지방자치법」 제140조” 를 “「지방자치법」 제157조” 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 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 으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법」 제39조” 를 “「지방자치법」 제47조” 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 를 “「지방자치법」 제13조” 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 를 “「지방자치법」 제161조” 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 를 “「지방자치법」 제159조” 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22조” 를 “「지방자치법」 제28조” 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 를 “「지방자치법」 제139조” 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 을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으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 를 “「지방자치법」 제13조” 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 중 “「지방자치법」 제140조” 를 “「지방자치법」 제157조” 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40조” 를 “「지방자치법」 제157조” 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으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 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로, “「지방자치법」 제90조” 를 “「지방자치법」 제102조” 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지방자치법」 제140조” 를 “「지방자치법」 제157조” 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단서 중 “법 제166조부터 제171조까지” 를 “법 제184조, 제185조 및 제187조부터 제190조까지” 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조” 를 “「지방자치법」 제16조” 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조” 를 “「지방자치법」 제16조” 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법」 제39조” 를 “「지방자치법」 제47조” 로 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7조” 를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2조” 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 를 “법 제47조제1항제8호” 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제1항” 을 “법 제51조제1항” 으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73조” 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96조” 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자치현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치현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0조제3항” 을 “「지방자치법」 제

14조제3항” 으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을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으로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 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 로 한다.

제33조(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 정비수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 정비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40조” 를 “「지방자치법」 제157조” 로 한다.

제34조(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40조” 를 “「지방자치법」 제157조” 로 한다.

제35조(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지방자치법」 제140조” 를 “「지방자치법」 제157조” 로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 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로 한다.

제37조(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4조 및 제116조” 를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및 제129조” 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3조” 를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6조” 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1조제1항 중 “법 제113조” 를 각각 “법 제126조” 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법 제113조” 를 “법 제126조” 로 하고, “소속하에서 서울특별시청와대소방대” 를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청와대소방대” 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법 제113조” 를 “법 제126조” 로 한다.

제50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64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71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3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89조제1항, 제92조제1항, 제95조제1항, 제98조제1항 중 “법 제114조” 를 각각 “법 제127조” 로 한다.

제101조제1항 중 “법 제114조” 를 “법 제127조” 로 하고 “정하는계량기의검정·검사” 를 “정하는 계량기의 검정·검사” 로 한다,

제104조제1항, 제110조제1항, 제113조제1항, 제116조제1항 및 제119조제1항 중 “법 제114조” 를 각각 “법 제127조” 로 한다.

제122조, 제125조 및 제128조제1항 중 “법 제116조” 를 각각 “법 제129조” 로 한다.

제38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 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로 한다.

제39조(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 를 “「지방자치법」 제156조”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영 89조제1항 각 호” 를 “영 제89조제1항 각 호” 로 한다.

제40조(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9조” 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3조” 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노동민생정책관” 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으로 한다.

제41조(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4조” 를 “「지방자치법」 제161조” 로 한다.

제12조제3항 후단 및 제13조제2항제2호 중 “택시물류과장” 을 각각 “택시정책과장” 으로 한다.

제42조(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 를 “「지방자치법」 제159조” 로 한다.

별표 2 II 제2호나목 중 “공공예금 적용금리 (6점)” 을 “공공예금 적용금리 (6점)” 으로 한다.

제43조(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 를 “「지방자치법」 제159조” 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각각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44조(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 를 “「지방자치법」 제159조” 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도시재생실장” 을 각각 “균형발전본부장” 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재생정책과장” 을 “균형발전정책과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생정책과” 를 “균형발전정책과” 로 한다.

제45조(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도시재생실’ ” 을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균형발전본부’ ” 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 를 “「지방자치법」 제159조” 로 한다.

제46조(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22조” 를 “「지방자치법」 제28조” 로 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노동민생정책관” 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으로 한다.

제47조(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5항 중 “「지방자치법」 제140조” 를 “「지방자치법」 제157조” 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의 표 감면대상란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한다.

별표 3 제2호나목의 표 감면대상란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로 한다.

제48조(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 를 “「지방자치법」 제166조” 로,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을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제6항” 을 “「지방자치법」 제166조제6

항” 으로 한다.

제49조(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 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로 한다.
별표의 □ 노동민생정책관 표 제목 “노동민생정책관” 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으로 한다.

별표의 □ 경제정책실 표 주관부서란 중 “거점성장추진단” 을 “전략산업기반과” 로 한다.

별표의 □ 도시교통실 표 주관부서란 중 “택시물류과” 를 “택시정책과” 로 하고, 택시정책과(중전의 택시물류과) 제15호란을 삭제하며, 택시정책과(중전의 택시물류과) 제16호란을 제15호란으로 하고, 택시정책과(중전의 택시물류과) 제15호란(중전의 제16호란) 다음에 물류정책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물류정책과	1. 일반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공사시행의 인가 및 변경인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구청장
-------	---	---	-----

별표의 □ 시민건강국 표 주관부서란 중 “식품안전과” 를 “식품정책과” 로 한다.

별표의 □ 주택건축본부 표 제목 “주택건축본부” 를 “주택정책실” 로 한다.

별표의 □ 주택건축본부 표 건축기획과 제1호가목 근거법령란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을 “「승강기 안전관리법」” 으로 한다.

별표의 □ 주택건축본부 표 건축기획과 제2호나목 사무명란 및 근거법령란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을 각각 “「승강기 안전관리법」” 으

로 한다.

별표의 □ 주택건축본부 표 주관부서란 중 “공동주택과”를 “전략사업과”로 하고, 전략사업과(중전의 공동주택과) 제3호란 및 제4호란을 각각 삭제하며, 전략사업과(중전의 공동주택과) 제2호란 다음에 공동주택지원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동주택지원과	1.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관한 사무		구청장
	가.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 및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 나.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 제1항	
	2.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 「주택법」 제94조	구청장

제50조(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1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각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중 “주택건축본부장”을 “주택정책실장”으로 한다.

제51조(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7조·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4조·제156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2호마목 중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를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로 한다.

제52조(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53조(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제6조 중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를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재정균형발전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4조(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각각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55조(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 를 “「지방자치법」 제159조” 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각각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56조(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지방자치법」 제173조” 를 “「지방자치법」 제196조” 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을 “재정담당관” 으로 한다.

제57조(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 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 를 “「지방자치법」 제176조” 로 한다.

제58조(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서울혁신기획관” 을 “시민협력국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갈등조정담당관” 을 “갈등관리협치과장” 으로 한다.

제59조(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제3조의(기금의 존속기한)” 을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60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을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61조(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62조(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 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로 한다.

제12조 단서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3호 표의 구분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제3호 표의 구분란 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 을 “국토교통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4호 표의 구분란의 제외면적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를 “「주택법」 제2조” 로, “제6호” 를 “제13호” 로, “제7호” 를 “제14호” 로 한다.

제63조(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20조” 를 각각 “제22조” 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21조제2항” 을 “제23조제2항” 으로 한다.

제64조(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을 각각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5조(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6조(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 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각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7조(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중 “주택건축본부장”을 “주택정책실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제함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으로 한다.

제68조(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9조(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70조(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단서” 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를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을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 으로 한다.

제71조(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협력상생담당관” 을 “대외협력담당관” 으로 한다.

1. 기금운용관

가. 국내협력계정 : 기획조정실장

나. 국제협력계정 : 시민소통기획관

제72조(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9조제1항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각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73조(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을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로 한다.

제8조제4항제9호 중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한다.

제74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9조제9호 중 “(너비 8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다만,”을 “(너비 8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54조제3항제2호중 “한국토지주택(LH)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75조(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12조제2호자목 중 “「지적법」”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점용허가관리대장을작성하여관리하여야 한다.” 를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로 한다.

별표 3 태양에너지 설비의 점용료란 중 “에너지조례 제25조” 를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19조” 로 한다.

제76조(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제77조(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사목” 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아목” 으로 한다.

제78조(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79조(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10조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을 각각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80조(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중 “지역공동체담당관” 을 “지역공동체과장” 으로 한다.

제81조(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3호 중 “「초중등교육법」” 을 “「초·중등교육법」”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2호 중 “「과학관육성법」” 을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도시재생실장” 을 “균형발전본부장” 으로 한다.

제82조(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노동민생정책관” 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으로 한다.

제83조(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각각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84조(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민생정책관” 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으로 한다.

제85조(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도시재생실장”을 “균형발전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5호) 중 “주택건축본부장”을 “주택정책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86조(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노동민생정책관”을 “노동·공정·상생정책관”으로 한다.

제87조(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88조(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단서 및 제5항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각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89조(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택시물류과장”을 “택시정책과장”으로 한다.

제90조(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여성권익담당관” 을 “권익보호담당관” 으로 한다.

제91조(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주관국(과)란 중 “여성권익담당관” 을 “권익보호담당관” 으로 한다.

제92조(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1항” 을 “제1항” 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을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제93조(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각각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을 “재정담당관” 으로 한다.

제94조(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 중 “거점성장추진단장” 을 “신성장산업기획관” 으로 한다.

제95조(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택건축본부장” 을 “주택정책실장” 으로, “도시재생실장” 을 “균형발전본부장” 으로 한다.

제96조(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을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로 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바목 중 “「철도건설법」” 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 중 “「지적법」 제5조제1항” 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으로 한다.

제97조(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98조(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

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을 “재정담당관” 으로 한다.

제99조(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100조(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제101조(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02조(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노동민생정책관” 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경제진흥본부장” 을 “경제정책실장” 으로 한다.

제103조(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

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36조까지의 개정 규정, 제37조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44조제1항(「지방자치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64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71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3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89조제1항, 제92조제1항, 제95조제1항, 제98조제1항, 제101조제1항(「지방자치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104조제1항, 제110조제1항, 제113조제1항, 제116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2조, 제125조, 제128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38조의 개정규정, 제39조 중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40조 중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제1조 및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41조 중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42조 중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 제43조 중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44조 중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45조 중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46조 중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47조 중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제48조 중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지방자치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2조의 개정규정, 제49조 중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50조 중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51조 중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 및 별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 제52조 중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53조 중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4조의 개정규정, 제54조 중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55조 중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의 개정규정, 제56조 중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제57조 중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